

# 大田廣域市工業團地特別會計設置條例에 對한 修正(案)

議 番	案 號	47P
--------	--------	-----

提出日字 : 1994. 12

提 出 者 : 大田廣域市長

## 1. 修正理由

- 가. 3·4 工業團地 造成事業을 公企業特別會計로 推進하던 公營開發事業團이 '94. 12. 31 廢止됨에 따라 現在 造成中인 4工團 造成과 科學産業團地의 持續的인 事業推進 물론 造成이 完了된 工業團地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 工業團地特別會計를 設置 運營코자 하였으나,
- 나. 公營開發事業團 廢止가 '95. 6月末로 延期됨에 따라 工業團地 特別會計 設置條例 施行을 '95年7月1日로 變更코자 하는 것임.

## 2. 主要骨子

- 工業團地 特別會計 設置條例는 1995年 7月1日부터 施行하기로함 (부칙)

##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(안) 부칙중 “1995년 1월1일”을 “1995년 7월1일”로 한다

## 수정안 대비표

당 초 안	수 정 안
부 칙 이 조례는 <u>1995년 1월 1일</u> 부터 시행한다.	부 칙 이 조례는 <u>1995년 7월 1일</u> 부터 시행한다.

## 大田廣域市工業團地特別會計設置條例制定

### □ 根 據

#### ○ 地方財政法 第5條 (會計의 區分)

- 地方自治團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區分
- 特別會計는 公營企業 기타 特定事業을 運營할 때 또는 特定資金이나 特定歲入·歲出로서 一般歲入·歲出과 區分하여 經理할 需要가 있을 때에 한하여 法律 또는 條例로 設置가 可能

#### ○ 大田廣域市地方工業團地造成 및 分讓에 關한 條例 第27條(特別會計의 設置)

市長은 工業團地造成事業의 合理的인 推進을 위하여 事業의 收入과 支出은 一般會計와 區分하여 계리하도록 工業團地 特別會計 設置가 可能

### □ 現 況

- 3工團 및 4工團은 公營開發事業團에서 公營開發事業特別會計로 事業施行에 필요한 財政을 運營하여 왔으며,
- 來年부터 본격적으로 事業이 착수될 科學産業團地의 경우도 3·4工團과 같이 公營開發事業團에서 推進할 計劃이었음.

□ 問題點

大田直轄市公營開發事業團設置條例(조례 제1894호, 1989. 3. 24)가 1995. 6월 말로 폐지됨에 따라 그 후 工業團地造成事業의 施行을 綜合 健設本部에서 推進토록 하였으나, 財政運營 필요한 特別會計는 미설치

□ 改善方案

3·4 工團 및 科學産業團地의 特續的 圓滑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財政運營에 필요한 特別會計 設置條例를 制定

□ 措置事項

「公營開發事業設置條例」 폐지

< 別 添 >

1. 大田廣域市工業團地特別會計設置條例案 提案書
2. 大田廣域市工業團地特別會計設置條例案
3. 工業團(用)地 關聯 特別會計設置條例案 比較

## 大田廣域市工業團地特別會計設置條例案

議 番	案 號	
--------	--------	--

提出日字：1994. 12

提 出 者：大田廣域市長

### 1. 提案理由

3·4 工業團地 造成事業은 財政運營上 公營開發事業團에서 公企業 特別會計로 推進하여 왔으나, 公營개발사업단설치조례가 내년 6월말로 廢止됨에 따라 동 特別會計도 폐지될 計劃으로 있어, 현재 造成中인 4工團 計劃中인 科學産業團地 持續的인 사업추진은 물론 造成이 완료된 公營단지의 效律的인 管理를 위하여 大田廣域市工業團地 特別會計를 設置·運營코자 함.

### 2. 主要骨子

가. 歲入은 用地分讓代金, 一般會計 轉入金, 借入金, 補助金 및 기타 收入金으로 하고, 工團造成에 필요한 모든 經費를 歲出로 하되 團地別 獨立採算을 原則으로 함.(안 제2조)

나. 事務處理는 이 조례에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一般會計의 例에 依함.(안 제3조)

### 3. 參考事項

#### 가. 工業團地 現況

구 분	위 치	면 적 (천평)	사업기간	총사업비 (억원)	비 고
1·2공단	대덕구 읍내· 대화동 일원	380	'69~'79	38	조성완료
3 공 단	대덕구 문평· 신대동 일원	373	'90.3~ '92.12	1,099	조성완료
4 공 단	대덕구 신일· 목상·문평동 일원	575	'91 ~'97	3,047	조 성 중
과학산업단지	유성구 관평· 용산·탑립· 송강동 일원	1,290	'90~ '97	5,246	실시계획 수립중

#### 나. '94년도 工業團地造成關聯 豫算編成 狀況

(단위 : 천원)

수 입 (A)	지 출 (B)
계 26,855,577	계 12,875,912
○ 3공단 공장용지 분양금 5,051,340	○ 3공단 폐수처리장 시설비 6,600,000
○ 3공단 폐수처리장시설부담금 6,600,000	○ 4공단 조성사업 6,275,912
○ 4공단 선수금 15,204,237	
차 액 (A-B) 13,979,665	

※. 「'94年度 公營開發事業公企業特別會計豫算書」參照

다. 關聯法規

○ 地方財政法

第5條(會計의 區分) ① 地方自治團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 區分한다.

② 特別會計는 公營企業 기타 特定事業을 운영할 때 또는 特定資金이나 特定歲入·歲出로서 一般歲入·歲出과 區分하여 經理할 需要가 있을 때에 한하여 法建 또는 條例로 設치할 수 있다.

○ 大田直轄市地方工業團地造成 및 分讓에 관한 條例

第27條(特別會計의 設置)市長은 工業團地造成事業의 合理的인 推進을 위하여 사업의 收入과 支出은 一般會計와 區分 記리 하도록 工業團地 特別會計로 設置할 수 있다.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##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시행하였거나 시행하는 공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공업단지 특별회계 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 세출)이 회계는 용지분양대금, 일반회계 전입금, 차입금,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, 공단조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하되 단지별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처리) 이 회계의 사무처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